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

2023. 3. 20.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1
2. 주요 개정 사항	1
II. 코로나19 대응	2
1.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 관리	2
3. 등원·출입 관리	4
4. 의심증상자 발생시 조치사항	6
5.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6
6.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휴원 기준	7
7. 재유행 시 신속대응	8
III. 지자체 협조사항	9
▷ 서 식 ◁	11
▷ 불 임 ◁	12

I 개요

1. 목적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상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포함 단, 세부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음

2.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변경(11판-1 / '23.1.30.)	변경(12판/ '23.3.20.)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u>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u>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u>착용 권고</u>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기 가동시 가능한 한 1시간 당 1회 환기 권고 • 공기청정기 가동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u>2시간당 1회 환기 권고</u>
특별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 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u>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u>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등 관리 철저</u>
급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 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설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u>개인 방역 수칙 준수</u>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 <u>자율적 운영</u>

일시적 이용 제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관찰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u>어린 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 집 원장이 자체 결정</u>
발열 검사	• (등원 출근시) 발열검사 1일 2회 이상 실시	• <u>발열검사 의무는 폐지,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 실시</u>

II 코로나19 대응

1.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성

□ 감염관리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을 관리
또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함

*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원장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2. 감염예방 관리

□ 감염병 예방 안내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내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2.10 개정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③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때 옷소매로!
-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안내방식) 보육활동 시 교육, 게시판, 가정통신문, SNS 등 활용

□ 마스크 착용

-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참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투명마스크 포함),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세척제(비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할 것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실시
 - 일 3회* 이상 환기하되, 밀집도가 높은 경우 추가 실시
 - * 영유아 등원 전, 보육시간 중 및 하원 후 환기를 기본으로 하되

실외 미세먼지 농도 등 외부 환경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가능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어린이집은 개인물품, 공용공간, 교재교구, 기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하며, 청소 및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 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등 관리 철저(필요시 전문 소독업체 의뢰하여 소독 시행)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 소독 별도 준수 필요

- 소독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게시물 활용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급식소(식당시설, 식당)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 원장은 5대 방역수칙을 지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3. 등원·출입 관리

□ 등원·출입관리

○ 원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 등원시 발열검사 의무는 폐지,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적 실시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이거나 격리 권고 중인(질병청 격리 기준에

따름)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린이집에 연락 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등원(출근) 중단

- 확진 후 격리해제(완치)된 경우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에는 등원 및 출근 가능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①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다.

②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한다.

③ 전염성이 없다.

◇ **【참고】 다만, '22년 3월 1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 상기 사유들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외부인 출입 관리

○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단순 방문 자제하고 원장 승인하에 출입

* 외부인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

- 다만, 중앙,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어린이집 평가, 지도점검, 공익사업 수행 등의 행정상 필요인력 방문에 적극 협조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

4. 의심증상자 발생시 조치사항

□ 등원·출근 전

-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시 등원·출근 중단**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상담, 진단검사 실시

□ 등원·출근 후

: 어린이집 내 의심증상자 발견 시 원장은 **아래 순서대로 조치함**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보육교직원>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즉시 귀가 → 진단검사 실시 안내 및 관리

<영유아>

: 마스크 착용 → 보호자 연락하여 귀가 조치 → 진단검사 안내 및 관리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확보된 안전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 대기

-어린이집 내 격리공간은 1인실 원칙, 다만 1인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② 의심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사용공간을 소독(알코올, 락스 등)

③ 추가 의심증상자(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유무 확인

5.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① (보고) 기초지자체 보고

- 원장은 확진자 발생사실을 관할 기초지자체로 즉시 보고 후 소독 실시

-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결정

② (자체조사) 접촉자 파악 및 안내

- 접촉자 관리는 원내 자율관리로 전환
- 다만,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자가진단검사키트 포함)

◇ 【참고】 원장의 PCR 진단검사 의뢰(붙임1 참조)

-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고위험기저질환자의 경우
원장의 확인서를 소지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는 붙임2 확인
- ⇒ 다만, '22년 3월 1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후속조치) 어린이집 내 검사결과 등 모니터링

6.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 휴원 기준

□ 일시적 이용제한 기준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은 이용제한 기간·범위를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자체 결정

- 이용제한 설정 구역에서 보육활동 불가

□ 휴원 기준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협조하에 관할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

- 어린이집 휴원시에도 긴급보육은 실시됨

* 긴급보육시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 금지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예외적 허용

7. 재유행 시 신속대응

- 재유행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어린이집별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 사전 준비 및 업무연속성 계획(BCP) 등 지속관리
 - (방역관리) 소독·환기 철저, 거리두기 강화, 특별활동 및 집단행사·교육, 외부활동 자제 등 상황에 따라 자율적 신속 대응
 - (BCP) 원내 종사자 다수 감염 등 위기상황에서도 핵심업무인 보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BCP 등 비상대응체계 지속 관리
- * 기타 강화된 방역수칙, 포스터, BCP 가이드라인 등의 참고자료는 이전 「어린이집용 코로나 대응지침」,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 게시물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IV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 모니터링

- 지자체는 어린이집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이행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서식1 참고)
 -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

□ 보고체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선으로, 1·2차에 나누어 보고체계 변경
 -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확진자(아동, 보육교직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에 즉시 보고 지속

① (1차) 아동(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고), 보육교직원(수기보고)

- 아동 : 어린이집 원장은 '23.02.20.(월)부터 매주 월요일 코로나 19 확진 아동 발생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 운영 - 감염병 보고(지난주 일~토에 발생한 현황 보고)
- 보육교직원 : 관할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매월* 수기보고
 - * 코로나 확진(보육교직원) 현황 회신 일자 : 2월 (2/27), 3월 (4/3), 4월 (5/1)
 - ** 현황 회신 시, [붙임] 양식을 참조해 주차별 일자를 확인하여 현황 기입

② (2차) 아동·보육교직원(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고)

- * 관할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수기보고체계 종료
- 어린이집 원장은 2023.05.08.월(예정)부터 매주 월요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현황을 시스템에 입력

- (격리시설 마련) 어린이집 내 의심 증상이나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 공간(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격리실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하되, 인근 시설의 유희 공간 활용도 가능
- (감염병예방 관리현황 확인)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소독, 환기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시설휴원 시)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긴급돌봄이 원활히 유지되고, 필요시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이 안내되도록 조치 필요 및 지속 모니터링
-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용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서식1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시

○ **확인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1)				
• 비상연락체계 (관할 보건소-관할 사군구 및 사도-의료기관)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4)				
• 감염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격리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위생 및 방역 관리(4)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				
•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일 3회 이상)를 하고 있는가				
• 손세척제와 휴지 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붙임1**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PCR 검사 의뢰서**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PCR 검사 의뢰서

* PCR 의뢰 가능한 대상자 : 밀접접촉자 중 면역저하자 또는 고
위험기저질환자

소속 기관명
(어린이집 명)

검사 대상자

시설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린이집에서 접촉자 분류한
결과 상기 인원은 PCR 검사 의뢰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
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원장

(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2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 폐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 신경계 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이식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geq 20\text{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c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